

【 1 】 第39回議會(臨時會)會期決定의件

제 의 년 월 일 : 1995. 8. 18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제39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· 회 기 : 1995. 8. 23 (1일간)

【 2 】 1994會計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 件

제 의 년 월 일 : 1995. 8. 17

발 의 자 : 이홍규의원외 2인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항 양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양주군의 199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1. 선임위원수 : 3인